

오래된 아파트, 장애인·소방차 주차할 곳 없다

**장애인 주차 맘 편하게 못해요
전용주차구역 의무 설치 해당 안돼
매일 휠체어 승하차 불편 호소
설치 요청했지만 입주주민들 반대
“법 고쳐달라” 청와대 국민청원**

오래된 아파트에 사는 장애인은 전용 주차구역이 없어도 불편함을 감수해야 한다. 소방차 전용 주차구역도 2018년 이전에 지어진 아파트에서는 마음대로 주차해도 처벌받지 않는다. 소급 적용을 막고 주차난 등을 고려한 규정이지만 자칫 법 취지를 퇴색시킨다는 점에서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용 주차공간은 커녕, 차량 세워둘 자리도 없어=최근 ‘모든 아파트에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도록 법을 고쳐달라’는 청원이 청와대 게시판에 올라왔다.

지난 2005년 7월 이전 준공된 아파트의 경우 장애인 주차구역을 의무적으로 설치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오래된 아파트에 사는 장애인들은 매일 주차로 인한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는 게 청원인 주장이다.

광주시 북구 770여세대 규모의 공동주택에 사는 50대 장애인 A씨도 비슷한 일을 당했다.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상황을 고려해 아파트측에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입주 주민 반대로 거부됐다. 주차 공간이 부족한데 특정 공간을 별도로 마련해 비워둘 수는 없다는 의견이 많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 주차 구역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하는 공동주택은 2005년 7월 이후 지어진 경우에만 해당된다.

A씨가 사는 아파트는 1991년 준공된 아파트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을 의무적으로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입주주민들 동의를 받아 전용 주차 공간을 마련할 수 있지만 주민들은 심각한 주차난을 들어 특정 공간을 비워두는 게 맞지 않아 전용주차구역 조성에 반대하고 있다.

이 때문에 A씨는 휠체어를 이용해 생활하면서도 매일 주차 공간을 찾아 단지 곳곳을 헤매야 하는 형편이다. 광주지역 1176개 공동주택 중 2005

**화재 때 소방차 진입 어려워요
2018년 이전 사업승인 아파트
전용주차구역 설치 예외조항
규정 준수 아파트 파악도 안돼
긴급상황 발생시 대형사고 우려**

년 7월 이전에 건설된 아파트는 대략 850여개. 이들 아파트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장애인 주차구역 설치 여부를 선택할 수 있어 설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주차공간 부족을 이유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의무적으로 설치하지 않아도 제재를 받지 않는다는데, 광주시도 관련 통계조차 파악하지 않는

등 무관심하다는 게 장애인단체측 설명이다. 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성우 사무국장은 “오래된 아파트를 포함해 모든 아파트에 전용주차구역을 두도록 관련 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지만 바뀌지 않고 있다”면서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장애를 가진 이웃이 느끼는 불편함을 덜어주는 방안을 고민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말뚝인 소방차 전용주차구역 주차금지-화재 발생 시 속한 대응을 위해 공동주택 내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을 조성하고 여기에 주차하는 일반 차량에 대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소방기본법도 유명무실한 상태다.

정부는 2018년 8월 이후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이 난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해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을 의무사항으로 규정했다. 하지만 2018년 이전 사업계획이 승인된 아파트에 대해서

는 적용받지 않는다. 물론, 자체적으로 노란색 선으로 공간을 만들어놓은 아파트가 있지만 규격(폭 6m)도 못 미치고 사실상 일반차량 주차가 가능하다보니 무용지물이나 다름없다.

광주시도 해당 규정을 준수하는 아파트 통계조차 확보하지 못했고 소방당국도 주차난을 감안해 크게 신경쓰지 않는 모양새다. 실효성이 없는 점은 소방당국도 알고 있다.

광주시소방본부 관계자도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은 주차면적이 적고 부지가 비좁은 구도심 아파트들에서는 새로 설치하기 어렵고 권고사항이라 강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신속한 화재 진압 및 인명 구조를 위해 마련한 규정이라는 점에서 법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물에 잠긴 아파트 지하주차장 지난 30일 오전 6시께 광주시 남구 봉선동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물이 차 오르면서 주차된 차량 20여대가 침수 피해를 입었다. 남구와 소방당국은 이날 지하 저수조에서 옥상 물탱크로까지 연결된 배관이 부식, 파손되면서 흘러나온 물로 침수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중이다. <남부소방 제공>

“여수해상케이블카측 주차장 무료 사용 불가”

법원 “법적 근거 없다” 소송 각하

여수해상케이블카측이 돌산공원 주차장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행정 소송을 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지난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행정 1부(부장판사 박현)는 여수해상케이블카가 여수시를 상대로 낸 ‘무상사용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소송 절차상 부적법한 사유가 있을 때 사건을 심리하지 않기로 한 결정이다.

여수케이블카측은 지난 2015년 4월 준공한 돌산공원 일대 기반시설(주차장·진입로) 확장공사비가 애초 계획(12억원)보다 2배 이상 증가(31억)한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데 따라 공원 주차장을 무상사용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여수시에 요청했다가 거부되자 소송을 냈다. 케이블카회사측은 애초 사업비를 전액 부담하고 해당 시설을 여수시에 무상구속키로 협약을 맺은 바 있다.

회사측은 주차장 유료화로 관광객들의 주차 편의가 줄어들고 불법주차로 혼란이 야기된다는데, 추가 사업비를 회수하지 못해 손해를 입게된다는 점 등을 들어 20년 간 무상 사용토록 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재판부는 케이블카회사측이 여수시에 주차장 무상 사용을 요구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보고 회사측의 소송 제기가 법률상 요건에 맞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해당 주차장을 포함한 돌산공원조성이 완료된 이상 해당 시설물 중 일부를 무상 사용하게 해달라는 신청은 공원조성계획의 변경을 구하는 것으로, 이를 거부하는 것은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수년동안 노동자 임금 체불 신안지역 염전 운영자 구속

수년간 노동자 임금을 체불한 혐의로 신안지역 염전 운영자가 구속됐다.

전남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지난 30일 사기 등의 혐의로 염전 운영자 A(48)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2017년부터 최근까지 염전 노동자 4명 명의로 대출을 받아 가로채거나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이들 노동자 가족들에게 돈을 보내주겠다고 속여 이들의 임금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한 혐의도 받고 있다.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이날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열고 증거인멸 우려 등을 들어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그러나 해당 염전에서 일했던 노동자들에 대한 감금·폭행 등 가혹행위 여부는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적장소가 의심되는 일부 피해자에 대한 신단 검사를 의뢰하는 한편, 추가로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 경찰들에게 술 접대·금품 제공했다”

재개발조합장 법정증언 놓고 공방

광주지역 경찰들을 상대로 한 술 접대와 금품 제공이 이뤄졌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지난 30일 광주지법 형사 9단독 김두희 판사 심리로 지법 402호 법정에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공판에서 증인으로 나선 전 광주 북구 모 재개발사업 조합장 출신 B씨는 A씨를 통해 알게된 광주경찰청 소속 C 경위 등 경

찰들에게 술을 사고 금품을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경찰관들과의 친분을 내세워 사건 처리를 잘해주도록 청탁하겠다고 하며 거액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B씨는 이날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 조합장 재직 중이던 지난 2016년 광주경찰청으로부터 C 경위가 참여한 압수수색을 받은 이후의 상황을 증언했다. B씨는 이후 A씨를 통해 C 경위를 알게 된 경위, 술자리에 참석해 술값 등을 제공한 사실, 변호

사를 알선받게 된 경위 등도 법정에서 증언했다.

B씨는 “A씨가 C 경위와 친하니 말을 잘해놓겠다고 했다. 2016년 말부터 2018년까지 적게는 200만원에서 700만원 등을 A씨에게 수차례 전달했다”, “C 경위는 술을 마시지 않는다고 알고 있지만 A씨가 부른 술자리에서 그를 본 적이 있다. A씨 요구로 200만 술값을 계산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덧붙였다.

B씨는 또 “이후 재개발조합 관련 문서위조 혐의로 고발당해 광주 북부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는데 담당 경찰관이 말을 듣지 않아 A씨를 통해 다른 경찰서 계장(경감)과 서장(총경)을 소개받았다. 유희비용 20만원을 계좌이체했다. A씨에게

현금 500만원이 든 봉투를 건네며 총경한테 전해달라고 부탁했다”고도 주장했다. 수사를 받은 경찰에게 변호사를 소개받는가 하면, 경찰 딸의 운전면허비용을 대신 납부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A씨 측 변호인은 “증인의 검찰 진술 과정에서 장소, 시기 등이 여러 차례 바뀌는 등 신빙성에 의심이 된다”며 “A씨나 지인에게 송금한 돈이 사실 외상을 갖기 위한 목적 아니냐, 경찰관이 현금도 아니고 계좌이체로 유희비를 요구했다는 것이 상식적이지 않다”고 주장했다. B씨는 오랜 시간이 지나 날씨는 헛갈렸을 수 있지만 A씨를 통해 금품을 준 것은 사실이라고 항변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부동산중개법인 한국토지부동산

전원주택 강력추천!

전남 담양군 가사문학면

경상리 전원주택부지

■ 면적 : 456평

■ 4채 건축허가 득

■ 진입로 상수도 확보

상담 010-3675-7592